

이천시위생매립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1997. 7.
제출자 : 이천시장

제안이유

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1997년 2월 4일자로 개정·공포되어 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의 직급을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이천시위생매립장관리소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주요골자

제4조 (소장)을 삭제함.

이천시조례 제 호

이천시위생매립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이천시위생매립장관리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4조 (소장) ① 관리소에는 소장을 두며,</u></p> <p><u>소장은 지방환경주사 또는 지방화공주</u></p> <p><u>사로 보한다.</u></p> <p><u>②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관리소의 업</u></p> <p><u>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한</u></p> <p><u>다.</u></p>	(삭 제)